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6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 의무개방일수 및 휴원·폐원시 조치사항,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지정, 생태계 교란방지 조치 및 동물원·수족관 검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이행평가(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원·수족관 실태조사를 5년마다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방법을 명시

나. 행정처분 기준 및 허가 관련 각종 서식(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 로 정하고,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서식 명시 다. 동물원 및 수족관 의무개방일수 확대(안 제8조) 현행 의무개방일수 30일 이상은 시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동물 및 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박물관, 수목원 등과 같이 90일 이상으로 정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되, 질병 발생 등으로 개방이 불가한 경우를 예외로 함

- 라. 휴원·폐원 시 신고 및 조치사항 강화(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현행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이 휴·폐원하는 경우 보유동물에 대한 조치내용을 첨부하여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물 방치 및 불법처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을 적정 시설로 이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허가권자가현장을 확인하도록 하여 보유동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개선
- 마.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조사방법 구체화(안 제1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환 경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종의 개체 및 번식 현황, 사육시설 및 건강관리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
- 바. 금지행위의 예외 및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안 제13조, 제 14조) 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이동전시하는 경우와 과학관, 동물치료시설, 생물자원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이동전시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고자 하며,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은 관람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사. 전염성이 높은 질병 및 생태계 교란 방지(안 제15조 및 제16조)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등을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정하여 즉시 격

리 및 관계기관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유동물에 의한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 탈출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

아. 교육기관·방법 및 각종 기록 보존 범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국립생태원, 해양환경공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과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실적 보고·제출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기록 이외에 사육시설, 전문인력, 질병치료 관련 내용 등을 추가로 보존하도록 규정

자.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 시기 및 방법(안 제20조)

허가권자가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실 관리가 우려되므로 5년에 1회 정기검사, 필요시 수시검사를 실시하도 록 정하고, 허가요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차.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 및 운영(안 제21조)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 시 동물복지 및 교육·연구 현황, 시설 및 전문 인력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

카. 기부금의 접수절차(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 영수증 발급, 지정 용 도로 사용, 사용실적 열람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 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

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 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관이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등)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 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검토를 위해 미리 평가 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제4조(결과 공표 등)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사항 및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 및 질병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 제5조(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②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이라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 제6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방하지 아니한 기간은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 제9조(휴원·휴관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원 또는 휴 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휴원·휴관신고서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휴원·휴관 사유서 1부
 -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원·휴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휴원·휴관기간 중 보유동물 관리계획서 1부

- 3. 향후 개방계획서 1부
- ② 제1항에 따른 휴원·휴관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제10조(폐원·폐관 시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 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유동물을 적절한 사육시설로의 이관
 - 2. 보유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 호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 가. 제1호에 따른 조치가 어렵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나. 수의사가 보유동물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회복이 어려울 것 으로 진단한 경우
 - 다. 수의사가 보유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경우
 -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원·폐관시 보유동물 관리계 획에 따른 조치사항
- 제11조(폐원·폐관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원 및 수족관의 폐원·폐관일 30일 전까지별지 제4호서식의 폐원·폐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허가증 원본

- 2.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폐원·폐관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제12조(보유동물의 조사 내용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동물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물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동물종 개체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 2. 사육시설 현황
 -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 5. 동물원 · 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 6.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고 환경부장관(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종에 해당한다)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수족관이 보유한 동물종에 해당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③ 보유동물의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 하여 전시하는 경우
 - 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 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에 한한다)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

- 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
-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 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종에 한한다)
- 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 제14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동물의 연구 및 치료,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제외한다.
- 제15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 생동물 검역대상질병

- 2. 그 밖에 야생동물 및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 제16조(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보유생물의 포획
 - 2. 탈출 예방 및 이동 제한을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격리하기 위한 조치
- 제17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중 동물원에 관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원
 - 3.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중 수족관에 관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수족관
- 4. 「민법」제32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제18조(교육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고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종합하여 1개월 이내에 동물원·수족관 허가권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법 제20조제4호에 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 2. 사육사,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보유현황 기록
 -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 제20조(동물원·수족관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1. 정기검사: 허가 후 매 5년에 1회
 -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 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따른 시설, 인력 운영계획 준수 여부
 - 2. 휴원·휴관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 원·휴관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 하는 자의 법 제15조 위반 여부
-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관리의무 준수 여부
-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일시와 대상 등에 대하여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결과를 30일이내에 동물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족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수족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평가기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지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 보유동물의 종 및 개체수
 - 2. 영 제19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의 적정성
 -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실적
 - 가. 교육실적
 - 나. 종 보전활동 및 연구실적
 - 다. 동물복지증진 계획 운영실적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동물원·수 족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 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운영자는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을 수 있다.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 수족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는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허가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	준
기 한 사 영 	1.71百分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	법 제10조	허가취소		
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1항제1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	법 제1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에 따른 보유동물의 적정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은 자가 법 제9조제1호부터 제6호	제1항제3호		1개월	3개월
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	법 제10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은 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	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시간(제18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	교육내용
# 7 N O	시간	- 4 · 11 · 0
		공통교육 6시간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전문교육 5시간
수산질병관리사	I I	· 동물원: 수의 임상, 방역 및 검역,
2.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의 및 수산질	11시간	동물 건강관리 등
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수족관: 수생동물 건강관리,
		수족관 차단 방역 및 검역,
		보유동물 건강관리 등
		공통교육 6시간
		전문교육 5시간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육사		· 동물원: 행동풍부화, 긍정강화,
4.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	 11시간	특수동물 관리, 안전관리, 환경
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윤리 등
사람 중 사육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수족관 : 행동풍부화, 수질 및
		환경관리, 영양관리, 위험동물
		관리, 동물복지 및 윤리 등
5.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	6시간	공통교육 6시간
족관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003-7012

비고

- 1. 동물원 공통교육은 동물질병 방역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 관리, 위험동물 관리 및 사고 예방, 동물복지, 동물별 생태습성 등 동물원 임직원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소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며,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 2. 수족관 공통교육은 수족관 위험시설, 인수공통 감염병 및 공중위생, 위험생물 관리 및 사고 예방, 수질 및 생명유지장치(LSS) 운영 등 수족관 근무자들이 공통으로 알 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의미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전문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

거점동물원·수족관 평가기준

1. 거점동물원 지정기준표

부문	항목	세부지표	배점				
	교육	최근 3년간 교육실적	5				
3개 분야 평가	종보전 활동 및 연구	최근 3년간 종보전활동 및 연구실적	15				
	동물복지	최근 3년간 동물복지증진 계획 운영실적	15				
	소계						
	동물원 면적	동물원 전체면적	5				
	동물병원	시설규모(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입원실)	5				
	강의실	시설규모(강의실, 준비실 및 현장 교육장)	5				
시설 평가	연구시설	연구실험시설 및 시험방사 훈련시설	5				
	수의장비	흡입마취기,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등	10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진단 시설	5				
		소계	35				
	운영관리	운영관리 인력 고용현황	5				
	사육, 복지	사육, 복지 인력 고용현황	10				
이러 터기	시설, 조경	시설, 조경 인력 고용현황	5				
인력 평가	수의	수의 인력 고용현황	10				
	(가점) 교육	교육 인력 고용현황	(가점 5)				
	(가점) 연구	연구 인력 고용현황	(가점 5)				
소계							
		합계	100				

2. 거점수족관 지정기준표

부문	항목	세부지표	배점			
	교육	최근 3년간 교육실적	5			
3개 분야 평가	종보전 활동 및 연구	최근 3년간 종보전활동 및 연구실적	15			
	동물복지	최근 3년간 동물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실 적	15			
소계						

	수족관 면적	수족관 전체면적	5		
	시설 및 장비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해양동물전문구조·치	5		
	기열 옷 성미	료기관 지정시 관련 시설 및 장비	ე		
시설 평가	강의실	시설규모(강의실, 준비실 및 현장 교육장)	5		
기원 청기 	연구시설	연구실험시설 및 시험용 수조 시설	5		
	수의장비	흡입마취기, 초음파진단기, 원심분리기,	10		
	7747811	세균 배양기, 위내시경 등	10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진단 시설	5		
소계					
	운영관리	운영관리 인력 고용현황	5		
	사육, 복지	사육, 복지 인력 고용현황	10		
인력 평가	시설	시설, 수질관리 인력 고용현황	5		
[인덕 평가	수의	수의 인력 고용현황	10		
	(가점) 교육	교육 인력 고용현황	(가점 5)		
	(가점) 연구	연구 인력 고용현황	(가점 5)		
		소계	30		
		합계	100		

비고

- 1. 채점방식은 상대평가로,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10점 배점 항목인 경우 상대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배점	10	8	6	4	2
등급	최상	상	중	중하	하

2) 5점 배점 항목인 경우 상대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배점	5	4	3	2	1
등급	최상	상	중	중하	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동물원 [] 허가 [] 수족관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시		처리일			처리기	간 3	30일	
	Ą	성명(대표자)	1					생년월일	텔			
신청인	<u>ا</u> ک	상호(명 칭)						전화번호	<u>.</u>			
	2	주소										
	٨	시설의 소재	지									
시 설		시설명세	전시 2. 수	 동물원 시설 전시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사육시설, 동물 진료 또는 격리시설 수족관 시설 전시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생물 진료 또는 격리시설,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 							정화시설	
				동물원 또는 수족관 선택시설 []먹이 저장창고 []오물 오수 처리시설								
		전문인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명칭										
변 경		소재지										
사 항	-	시설의 명서	I									
	Į	대표자 성명 및 주 <u>:</u>	<u> </u>									
		관리계획 및 그 밖의 사형										
				보유하	- 생물종	및 사육시설	명사	4				
일련 번호	Ç	일반명	학	명	개 체 수	법정보호종	*	시설규모	2(동)	시	설면적	(m²)
						보호대상 해양성 제2항, 같은 법						 へ조고lol
		: 누득관의 원 변경허가을 신		_	세0조세1성•	제2성, 겉ㄷ 딥	시행	당 제9소0	11 444	궁글판	- X-	下寸ゼー
										년	월	일
	_					청인 	_	_			(서명 5	돈는 인)
유역횐			환경청	장·지빙	당해양수신	<u>·</u> 청장 또는	- 시	·도지스	- 귀하	-		· 수료
진정인(대 제출 서		뒤쪽 참조										·ㅜ됴 없음

<등록 신청인 경우>

- 1. 시설의 명세서, 내부 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원 및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및 휴·폐관 시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보유동물 복지 증진 프로그램 각 1부
- 4. 동물종별 동물복지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인 경우>

- 1.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 동물원	권 및 수속관의 관i	리에 관한 	ː 법률 시행규직 [멸시 세2호	서식]					(앞쪽)
제	호									
	[]	동물원	[] 수족	·관 :	허기	증		
٨	설 의 명	칭								
소	재	지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물원 및 수족관		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5조제2형	함에 따리	· 위와 같이	허가
						년	İ	월	일	
			험장•지빙					직인		
		양수선	<u> </u>	는 시	・도지시					

※ 주의사항

- 1.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이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폐원의 신고를 할 때에는 폐원신고서에 이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자	내 용	확 인

[] 동물원 [] 수족관 휴원·휴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5일
امرام	성 명(대표기	(†)			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기관당	명)			(전화:)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시 설	시설의 명 칭					
	소재지				(전화:)
휴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휴원·휴관 사유서 1부 2. 법 제8조제1형제4호의 휴원·휴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휴원기간 보유동물 관리방안 1부 없음 3. 향후 개방계획서 1부



[]동물원 []수족관 폐원·폐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	은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	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 소(기관명				생년월일	
		,			(전화:)
	허 가 번 호	제	호	허가연월일	년 ⁻	월 일
시 설	시설의 명 칭					
	소재지				(전화:)
사 유						
「동물을 같이 신고		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	청장·지방	환경청장·지	방해양수신	·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지 제출 서류	^{사)} 명하는 /		게 관한 법률」 저	8조에 따른 조치를 적	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	수수료 없음

 서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수 리 → 결 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 호 교육이수증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근 무 처 명 : 교육실시기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월 년 일 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m²)]

거점 [] 동물원 [] 수족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성 명(대표제	Z [)		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기관명	명)		(지원)	
				(전화: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사진 각 1부	
	2. 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수수료
	3. 보유동물 명세서 1부	없음
	4. 최근 3년간의 교육, 종보전 활동 및 연구, 동물복지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지 정	→	게 시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 해양수산부	_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정번호 제	<u>Φ</u>
거짇	[]동물원 []수족관 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지정기간	
	!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점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